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55
----------	----

제출년월일 : 1998.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제안이유

중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대통령령 제15630호)”가 폐지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916호)과 동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25호)이 '98.10.16자로 제정·공포되어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본청과 직속기관별로 각각 운영되었던 기구설치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의 부·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 본청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통합하고, 관리국은 기획관리국으로 개편함(안 제6조, 제7조)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합(안 제8조)

- 충청북도단재교육원의 명칭을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으로 변경(안 제2절제 11조)
- 통합조례 제정으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외 7건의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충북수영장, 청주수영장, 충주수영장은 설치조례 폐지후 관리권을 인접 학교장에게 이관(안 부칙 제2조제7항)
- 기구명칭 변경, 계단위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자구정리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과 같음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본 청

제5조(국의 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도
2.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지도
3. 장학지도,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4.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의유학에 관한 지도
5. 교원의 자격·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6.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7. 과학 및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 전산화 및 교육정보화 계획수립 및 지원
9. 평생교육의 진흥
10.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11.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2.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련 업무
13.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14. 직속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지도

제7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3.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학생 수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
8. 예산의 편성·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원
10. 행사·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12.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13. 법제에 관한 사항
1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 및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
1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 1 절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제8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진로지도, 교육자료를 개발하며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의 탐구학습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180번지에 둔다.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2. 현장교육 조사 연구 및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3. 교단지원 자료 개발·보급
4. 학생 교육상담 및 생활지도 자료 개발·보급
5. 진로·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6.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7. 교육정보화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제 2 절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제11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재의 얼을 이어받아 학생들의 인격을 도야하고 애국애족 하는 학생상을 정립하며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원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교육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번지에 둔다.

제12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 및 공무원 연수에 관한 계획과 조정
2. 연수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제작·편찬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연수생의 평가와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제 3 절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제14조(설치) ①법 제41조 및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도서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38-6번지에 둔다

제1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6.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 4 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17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제18조(관장)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회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소년의 문예 및 체육활동의 공간 제공
2. 도서실 운영
3.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전개
4.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제20조(설치) ①법 제41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야영장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4번지에 둔다

제21조(장장) 야영장에 야영장장을 두며, 장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업무) 야영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단체 단원들의 야영과 수련활동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 6 절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23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24조(소장)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
2. 실업계 교원의 농업 또는 공업관련 특별연수
3.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조례 제2296호)
2.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2117호)
3. 충청북도단체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2053호)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조례 제2294호)
5. 충청북도립학생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2295호)
6.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조례 제2406호)
7.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2236호)
8.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조례 제2253호)

제3조(직속기관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은 동 위치에 신축중인 건물
이 준공되어 이천후 업무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제14조제2항중 “행정관리담당
관”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총리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③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인사계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과·담당관 또는 계(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을 “과·담당관
(이하 “처리과”라 한다)이”로, 제9조제1호중 “관리국 총무과 서무계장”을 “기획
관리국 총무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2호중 “서무계장”을 “업무담당주사”
로, 동조제3호중 “관리국 총무과 민원봉사계장”을 “기획관리국 총무과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동조제4호중 “담당업무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5호중 “경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제1조, 제2조제3항, 제4조제1호, 제2호및제3호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동조제3항중 “초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초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행정과장,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 사회과장, 부녀청소년과장”을 “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기획관리과장,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관”으로, 제6조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 사회교육계장”을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사회교육체육과 사회교육계 담당자”를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행정과장”을 “공보감사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기획관리과장”으로,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제6조중 “예산계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동조동항제3호중 “재무과 관재계장”을 “학교운영지원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5항제2호중 “각 계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 및 각 계장)”을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장학사)”로, 동조제5항제3호중 “경리계장(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